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4. 11.(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9차, 제10차,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4월 1일에 있었던 제1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19-062~08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지난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보고된 안건 중에서 <보고사항>입니다. <가>와 <나>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이달 말에 유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이드라인이 지금 논의 중인데 며칠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9차 제도정비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상정..., 저희가 보고 형식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관련 조사제재의 건들은 그 과정이 대체로 충실하게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보고사항 가> 같은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침안에 관한 사항도 정책과제로 하겠다고 보고한 다음에 의결을 앞두고 안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번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좀 더 의견을 긴밀하게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송신 가이드라인 제정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들 간에는 한두 차례 논의하고 전체회의에 올라와서 심결한다기 보다 조금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또 그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개별보고도 사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무처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사전에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더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들 전체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는다면 우리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고 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잘 밟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히 국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쟁점 있는 사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전체회의 1주일 앞두고 보고하기보다도 좀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 번 정도 더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가능하면 바로 상정을 하지 않고 한두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논의과정이 꼭 상임위원 간담회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표준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상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 사이에서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인터넷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이유는 저희가 세미나 한 것이 3월 며칠이었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25일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3월 25일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3월 25일 세미나를 통해서 이 안이 일단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위원회 <보고사항>이긴 하지만 상정도 하지 않고 계속 수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오늘 보고를 접수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공론화한다는 의미에서 상정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어느 것은 동의하고 어느 것은 이견이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지지난번엔가 한 번 어느 국에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일부 언론에 우리 방통위 업무와 관련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재송신 가이드라인 부분은 저도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이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간에 ‘아직 우리에게서 설명이나 보고, 논의가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저는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처에서 하는 일이나 방통위 일 중에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의치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보고안건이나 의결안건으로 언제쯤 상정하겠다는 결정을 언제 하는지,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자, 이것은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평소에 보면 실·국·과에서 어느 이슈에 대해서 대개 오랫동안 검토 내지는 준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이 있던 것을 할 때는 어느 것은 3개월, 6개월, 1년 걸릴 때도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는 물론 주간 업무계획을 통해 꼭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6개월이고 1년이고 쑥 작업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티타임 안건으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업무 전체를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튜닝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나 검토를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이야기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난도가 높은 이슈일수록 작업이 절반 정도 된 상태에서 꼭 사전 의견조율 차원이 아니고 한 번 캐주얼하게 의논해 볼 수도 있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은 작업을, 연구를 실무적으로 꽤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작업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사전 설명도 하고 티타임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전체 공정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짧은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체제라서 불가피

한 것도 있고 갑자기 긴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크게 이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아이디어도 구하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저도 방통위 일을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실무를 해 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 관심사항도 될 수 있고 팔로우업 하는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듣는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국·과에서 꼭 위원들에게 사전에 협의 내지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언론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알려주어야 하고, 또 기자들의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안전은 본회의에 올리기 일주일 전 내부 티타임 전에 주고, 크게 이견이 없으면 바로 전체회의에 올리기 때문에 그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전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안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안전들은 위원들에게 충분히 최소한 한두 주 정도 더 여유를 주시면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언론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이 모르는 것을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셔서 그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희 2016년 업무계획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한 것이 시행되고 있고 해서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아마 위원님들께 중간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앞으로 민감한 안전은 중간단계에서 보고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무국의 사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업무에 쫓기다 보면, 그것이 대강 어느 시점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압박해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어려움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 위원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국에서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안전으로 돌아가서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망법령을 위반한 26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개요는 2015년도에 자진신고한 사업자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총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위드웹 등 2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위반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와우소프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에도 약 12만 5,000여건을 수집·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정명령입니다. 26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기본적인 부과 방향으로서 영세사업자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해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관련해서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기업인 (주)위드웹은 1,500만원, (주)캔들미디어, (주)벤티코리아는 1,000만원, (주)엠포, (주)아이티앤스토리, 청개구리투자클럽(주)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인 (주)와우소프트, (주)포스트미디어, (주)이한캐스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주)티오피홀딩스, 와이제이정보(주), (주)모든국민은주주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부과하고, (주)알티컴즈와 (주)피플링크, (주)넷띠앙닷컴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 기업으로서 (주)MD파트너쉽, (주)엔씨에스, 문자사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원스탁, (주)바다정보, (주)아이크레티브, (주)씨엔에스컨설팅그룹, 유진, (주)버블네트웍스, (주)북다, (주)쓰리큐브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위반 관련해서 (주)와우소프트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위드웹 등

2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2014년도 11월 29일 이전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벤티코리아는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된 점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서 2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반 사업자별 이와 같은 시정조치(안)의 세부적인 내역은 11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업체들이 다 전북지방에 소재한 업체들입니까?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입니까?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 판매상을 전북지방경찰청이 검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전북지방경찰청의 소관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닙니까?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수사를 했는데 수사 관할은 전북지방경찰청인데 업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까?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판매상이 전북지역 관할이었습니까, 아니면 판매상은 전북지역은 관할이 아닙니까?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원래 판매상이 중국에서 입국하다가 전북지방경찰청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판매상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입건이 됐는데 그 판매상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킹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업체들을 다 살펴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관련된 것이지요?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판매상을 전북지방경찰청이 잡았는데 그 판매상과 연루된 업체들의 소재가 전국이군요?

○ 강필구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왜냐하면 전라북도 지방에 있는 업체 26개가 됐다면 그 지역이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아본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개인정보의 여러 가지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들, 그리고 자진신고한 업체들 위주로 시정조치 및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기획조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것들이 시정되어서 더욱 더 탄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신유형의 서비스가 복잡·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경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공정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법무부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또 공정위의 표시광고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과 같은 법 또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이번 지침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요소 및 실행 방법의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기업 내 임직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자문기구로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협의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토대로 해서 10%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 5페이지에 설명이 있듯이 현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자율준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10/100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는 안건은 그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운영해야 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고 알려져 각 기업들이 표준 지침을 준수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통위는 올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업무 추진 방향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 지침은 현재 고시에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 방안들도 연구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되면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계획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어떤 시각으로 방통위를 보느냐가 결국 이용자들이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비교하는 것이 공정위의 동의를결제도이지 않습니까? 방통위판 동의를결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잠깐만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침 제9조를 보면 제9조 혜택의 부여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의 이통3사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한 이번의 조사 과정을 보면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련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거기 누가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촬영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금년도 업무계획의 하나는 일종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는 타이틀 내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의결제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 지침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의의결제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 법령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입법계획으로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사항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인데, 법제화를 검토한 결과,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그거는 이미 현행 과징금 고시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기통신사업법 입법계획을 할 때 별도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 보면 최고경영자의 의지도 게시가 되어야 하고 자율준수관리자도 임명되어야 하고 자문기구도 운영되어야 하고 편람도 제작되어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을 꼭 준수하려면 상당한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대기업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대기업 말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과징금 부과 감경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제재를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에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일지라도 큰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가이드라인상에서도 중견기업은 일종의 권장사항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해도 가능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수행해 나갈 역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요소 및 실행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가 쪽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과징금의 감경혜택을 받으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든 것을 다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소위 예시적인 것들로 해 놓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더라도 일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자율준수 교육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꼭 이견이 없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다가 꼭 여기 오면 생각이 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 배경에 보니까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표>에 <금지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 동기가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전에 보고드린 과징금 부과기준은 지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용 범위는 일단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추진배경에 그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진 위원님이 일부 지적은 하셨는데 편람과 교육 이야기가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통위가 늘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기 쉬운 것이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 또 그 중에서 큰 3사를 주로 머리에 떠올리고 3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이나 자율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문제는 기간통신사업자도 다수이고 별정사업자는 훨씬 많고 부가통신사업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현행 법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규모와는 반대일 수도 있고, 대형사업자는 위반한다고 하면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다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편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3사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제작할 수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측면에서 더 취약한 사업자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자별로 다 제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회적으로 코스트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어 차원에서 편람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서 편람도..., 물론 기본 텍스트는 거기에서 만들고 사업자별로 그것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입 직원들이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싶은데, 협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협회·단체에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관장하는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또 자율프로그램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내지는 품질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자이고 방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이고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다 있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 평가 같은 경우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렇게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주 다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방통위,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부 등 이런 정부 부처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평가제도를 한 번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혹시라도 상호간에 중첩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자들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방통위 같은 정부 입장에서 봐서도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정책국에서 차제에 자율적·의무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을 한 번 쪽 분석해 보면 뭔가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기간도 차이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인데 방법이 달라진 상태로 운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길어져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것이 시행되면 제가 아까 여쭙 본 대로 대기업 내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자본이 넉넉하고 역량 있는 대기업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마치 봐 주는 듯한 예를 들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이런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자본이나 역량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너희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감경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자본이 없고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별정사업자나 부가사업자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갖기가 힘듭니다. 이런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편람을 제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자율적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면 다른 자본이 없는 부가사업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방통위에서 유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편람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겹을, 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협회·단체에서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자율준수 선언을 한 업체들에는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선언하고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가중처벌은 없는 것이지요?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형평성 문제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대기업들은 무조건 자율준수 선언해 놓고 보겠다. 나중에 걸리면 무조건 10/100을 감경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선언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신 가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자율준수, 자율규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영세업체들은 가입하기조차 어렵고, 대기업들은 무조건 가입해 놓고 걸리면 혜택을 보니까, 안 지키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것으로, 그러나 효과를 십이분 거둘 수 있도록 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쪽 나열이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이것을 다 시행하면 무조건 감경한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 것이 자율준수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보는 하나의 지표이고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한 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감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좀 더 조밀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되어 있더라도 그 나름대로 자기의 기업의 능력 범위 내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안전이 생겼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감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협회 차원에서 공통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은 지금 좋은 의견 주신 것 다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 틀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주요경과입니다. 이용자 본인의 과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위 ‘잊힐 권리’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공개 세미나도 3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견수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과 관련해서 권리행사의 대상은 이용자 본인 또는 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행사의 주체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 누구든지 가능하고, 그 상대방은 게시판 관리자, 그리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며, 특히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요청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시도를 했는데 삭제할 수 없을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만약에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검색목록 배제를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청인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의 접근배제 여부 판단 및 결정입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접근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블라인드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캐시 등을 삭제해서 검색 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게 되고, 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기초로 해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배제 예외로서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서 해당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게시판 관리자 등은 접근배제 조치 혹은 거부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요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접근재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제자료’, ‘언론기사’ 그리고 ‘제3자가 작성·게시한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상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붙임>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지금 보고하신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25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발표된 그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이전에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

자들에게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나 과정에서 또 세미나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또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 국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를 충실히 하면서도 각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에 올린 것은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진행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외부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시행하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것은 첫 번째 안으로 제시된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과 또 사업자들이 낸 의견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추가해 나가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이 안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도 있습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밝힙니다. 무엇보다도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판단을 해야 하는..., 예를 들어 법에 호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의견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용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잘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탈퇴를 했다가 오랫동안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을 확인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저희들이 세미나에서 공개하기 전에도 그렇고, 또 이후에도 사업자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본인 확인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듯이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게시물, 즉 자기임과 내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먼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입증자료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본인 확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새로운 업무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에도 현행 임시조치와 같이 비록 타인, 제3자의 게시물이라는 합니 다만 그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임을, 본인의 명예훼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는 업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본인의 동일성,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행 업무를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하면 본인 확인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서 고의나 또는 과실 없이 이행을 한다면 그런 사업자의 일종의 책임, 면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자기게시물을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사업자만 우리가 보호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과 차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이드라인에 소위 외국인 사업자에 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통제력이 약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국내의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짚막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미 가이드라인은 외국 사업자도 적용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그쪽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국내 사업자도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 사업자들도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왔고 소위 말해서 몇몇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응답을 해 왔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만나왔고 협의해 왔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직자들 이런 공인인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과 파장 등을 고려해서 자기게시물 삭제요청을 할 때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나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삭제요청을 제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가다듬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가이드라인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추상적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하지만 저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해, 소위 말하는 KISO,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스스로 그 공익에 관련된 판단 기준을 이미 마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은 그대로 여기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계와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업계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기준과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그 자체가 업계에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있는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사업자들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댓글 단 사람도 자기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댓글도 자동으로 삭제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임시조치가 됐든 또는 자기 글을 삭제하든 현재 게시물에 대해서 원글을 삭제하면 댓글도 같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개발을 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글에 대해서도 제3자의 글이 됐든 모든 글에 대해서 원글과 댓글을 분리하는 노력은 향후 추가적으로 업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도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든 것은 사실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각 당사자들 입장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법제화를 하기 이전에 각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마치 시범서비스를 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가이드라인 형태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처럼 이것은 해당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를 해야 할 것이고, 저희가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자율준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사업자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해서 소위 KISO가 나름대로 정책규정을 만들었고, 정책규정 해설서에 상세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경우가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KISO의 정책규정에 있는 그 규정 해설과 차이가 없이 해석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자기 게시물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댓글이 삭제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많은 게시판이나 또는 검색에 있어서 자기가 올린 글을 자기 스스로 삭제를 할 수 있어서 삭제를 한 경우에는 댓글이 다 따라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댓글 100개를 누가 달았다, 그런데 내가 그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리면 댓글이 자동적으로 다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카카오토티나 네이버의 블로그나 다음의 카페도 다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것은 질문, 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래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자기 스스로 삭제하는 권리는 당연히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댓글 삭제 문제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기로는 댓글도 누군가가 올린 글이기 때문에 원래 게시글이 삭제되어서 없어졌을 때 댓글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자신의 글만 삭제하고 댓글들은 남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된 형태지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빼고 우선적으로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근간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시행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3자 게시물은 방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도 가능하고, 또 반론보도도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자기 게시물 정보접근 배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즉, 알맹이가 빠졌다.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권리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추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발표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발전해 나갈 지에 대한 계획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우리의 잊혀질 권리 내지는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권한은 정보의 자기 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강조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 주체별로 보면 정보 역량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정보검색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정보 약자들은 정보검색 역량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검색이나 블라인드 방식 요청이나 권리행사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비대칭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의 비대칭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의 추후 제정과 더불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특히 정보 약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지원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잊혀질 권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보호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3자의 글을 삭제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기 게시물의 소유권이라고 할까, 자기 결정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는 관계없이 내가 쓴 글이니깐 내가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지요?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그동안 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 소위 말하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 또는 범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의의 잊혀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잊혀질 권리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제도 하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쓴 글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로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언론과 관련된 부분의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현행 법·제도상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기의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광의로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작성 게시한 글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이것이 괜찮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이버 디지털 공간의 무질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글을 써 냈으면 말을 뱉어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신문에 어떤 개인이 기고·투고했다, 그 신문의 편집자가 편집·게재하기로 결정하고 편집했다, 그리고 인쇄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투고자가 편집 들어간 글에 대해서 '나 그것 빼겠다'고 자기 권리라고 해서 행사하려면, 편집자, 그 신문사, 언론사와 협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쇄 발행된 뒤에는 공론의 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개인 소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공공의 장에 이미 던져진 공론의, 공유의 논쟁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붙는 댓글들도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아까 말이 나온 것처럼 원래의 글을 삭제하면 거기에 따라 붙는 댓글들을 다 함께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공론화가 된 뒤에 그것은 사회적 공유물일 수 있는 것인데 공론의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원래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글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공론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제제기,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회적 공론을 일시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써서 공개됐으면 공론의 장에 나왔으면 그것은 완전 개인의 소유물, 개인의 권리대상은 벗어난 것 아니냐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힐 권리는 유럽에서 많이 논의됐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곤잘레스 사건 같은 것, 지난번에 외국 출장 때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에 가서 직접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명예훼손에 기반하여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고 제소해서 승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작성 게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한 소유물로 인정하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윤리, 사회적 책임 문제에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분리해서 블라인드 하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임시조치 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논의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글조차도 삭제할 때....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 판단의 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계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 김재홍 부위원장

- 협의가 됐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또 하나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올린 글에 관해서 어찌고저찌고 나왔는데 어떤 공무원이나 공인이 직무가 있을 때 직무상 필요하다든지 느낀 것들을 올렸다가 나중에 그 직무에서 퇴임한 뒤에 해제된 뒤에, 개인의 소신이 바뀌면 안 되겠지만 자리가 바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그때 썼던 글을 내가 지금 삭제해야겠다면 그것은 곤란하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KISO에 있는 규정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뺄 수 있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적용 예외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적용 예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은 KISO에 있는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순조롭게 가면 순기능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꼭 역기능, 부작용, 악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개인은 어떤 조직이나 권력에 약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써서 올린 글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기업이나 권력자가 약한 개인에게 접근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매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버 공간이 정말 무질서해지고 무책임해지는 것입니다. 공익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 그런 악용의 소지는 없을까를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쪽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개인이 자기가 쓴 글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려야 하는데 사이트가 없어졌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됐다거나 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업무폭주 걱정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김재홍 부위원장

-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일단 써서 공개했으면 거기에 대한 작성 게시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도 삭제권리에 못지않게 자기 글을 삭제할 권리, 요청 권리 못지않게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

이드라인화하거나 사회적 윤리라고 할까,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윤리 기준 같은 것으로 함께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게시물은 헌법상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정이 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관리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게시물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정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령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내가 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엿저녁에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오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정하고자 하는 적용범위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상당히 오래 전에 썼는데 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뭔가 지우고 싶은 사연들, 하소연, 내가 현재 취업이나 또는 결혼, 승진 등에 불이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지우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 불법성이, 불법행위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지난주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듯이 댓글조차도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불법성이 있으면 그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성과 거리가 조금 있고, 기본적으로 불법적이 아닌 내용이지만 수년 전에 본인이 쓴 글을 지우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현재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설사 그 게시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게시자 본인은 언제든지 그 게시물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까도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로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을 했든지 또는 본인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사이트에서 탈퇴해서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몇 예외적인 사이트에서 댓글이 있을 경우에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 또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익과 관련된 부분,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공익과 관련이 댔더라도 자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다 지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울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전판을 하나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일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게시판이나 또는 검색 사이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자기가 임의로 다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을,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삭제를 못 하게 됨으로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장 뜨겁게 잊힐 권리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올린 글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때 그것을 삭제 요구할 수 있느냐, 또는 검색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가 협의의 잊힐 권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글도 잊힐 권리 하나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올린 게시

물도 잊힐 권리의 대상이고, 넓게 볼 때에는 그러한 게시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싶다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잊힐 권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잊힐 권리를 나름대로 검색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본의 야후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도 잊힐 권리 차원에서 삭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등 잊힐 권리의 개념의 외연은 상당히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는 다양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한 것이면 빨리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번에 출장도 갔다 오고 티타임 때 제가 참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자기게시물은 제가 볼 때 의외로 쉽게 범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게시물을 게시하면 자기게시판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즉, 별도의 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사이트의 특정 메뉴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게시물을 게재하는 게시판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의가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자기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플랫폼을 빌려 쓰든 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게시판, 즉 어떠한 글을 올려서 게시할 수 있는 코너와 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일종의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좌우지간 게시자가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다 게시판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3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접근배제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그러면 언론기관 관계인 예에 보면 인터넷기자도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언론으로 분류되는 곳에 무슨 자격

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기자로 등록되어서 글을 올린 경우, 또 동일하게 활동은 인터넷 기자로 활동합니다만 그 게시판이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접근배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정은 현행 KISO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도 임시조치 관련해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게재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즉 게시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봐도 게시판이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게시판은 모든 게시판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어차피 임시조치의 대상인 명예훼손 글도 모든 게시판이라고 전제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최윤정 신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께 질문할 테니까 박 국장님께서도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4년 5월 ECJ 판결 이후 2014년 9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연구반도 17회 운영했다고 하고 공개 세미나도 3차례 개최했다는데, 안전 심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장기간 연구도 필요하고 의견수렴도 오래 해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 ECJ 판결 이후에 방통위에서 이런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됐든 법제화가 됐든 저희가 조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은 제 기억에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중간 과정에서 한 번 위원님들께 그것도 자율적으로 어떤 형태든 의견수렴 내지는 공개세미나 참여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히 안전에는 추진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 <붙임> 제정안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나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3월 25일 세미나에 가서 들어도 봤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지만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선 이 적용대상, 적용범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시물의 개념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효력은 뭐냐? 아까 표준 지침 이야기할 때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제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의 가이드라인은 뭐냐? 저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도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무엇이나? 아까 외국 사업자와 서로 역차별이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순전히 형식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통위, 정부 입장에서 자기게시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 상실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게시판 관리자 내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저희는 정부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개념이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꼭 정부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정부든 사업자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느끼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방통위가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보다도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업자들 입장에서 정하고 판단하고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통위 입장에서도 수많은 토론,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마치자면 그러한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Fine tuning)을 해서 일단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행 과정에서 지금 생각하지 못한, 저희 방통위든 아니면 사업자든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또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2014년 5월에 ECJ 판결로부터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된 잊혀질 권리로 시작해서 지금 이름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이렇게 된 이 이슈가 잘 정착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 과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윤리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상당 부분은 답을 주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중간 단계에서 미리미리 보고드리고, 또 방통위 내부 차원에서 공개 세미나도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이지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잊힐 권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연구반 안에서도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정리된 내용으로 보고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힐 권리의 필요성과 적용범위, 적용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잊힐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론화됐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더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에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잊힐 권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배제하고 최소화해서 자기게시물에 한정해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잊힐 권리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화된 범위에서 우선 도입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기게시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인 경우에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의 지침이 되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격은 사실 법에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행정 지도적인 성격을 가진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법제화하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사회적으로 공론을 이끌어 가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걸음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지도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서비스로도 볼 수 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더불어 이렇게 성장해 왔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되고, 상당 부분 사업자들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한바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면 꼭 그런 뜻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아닌데 방통위가 불요불급한 규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이슈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방통위가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사업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도, 자구로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윤정 개인정보윤리과장

- 잘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쪽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게시물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접근배제요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우리들이 의견을 모아서 자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예외적으로 삭제를 보류하겠습니다라는 방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모 일간 신문사가 어떤 기준을 제시했느냐 하면 형사사건에서 최종심에서 무죄 또는 검찰조사를 해서 무혐의 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 전 단계에서 기사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된 개인정보의 잘못된 내용을 당사자가 요청하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도 다른 중앙일간지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기사의 수정·삭제 등을 해 주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각 사업자들이 이런 잊힐 권리에 관한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소위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거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글을 올린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업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수정·보완해서 나중에 법제화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욕심으로는 잊힐 권리의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본질에 관해서도 저희가 뭔가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진짜 굴뚝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그마치 17번이나 전문가 연구반 회의를 하고 2번의 세미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세계적인 추이도 보면서 좀 더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연구반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세미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 과정이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게시판 관리자나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그것이 자기게시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폐기해서 대조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 가이드라인에 아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특정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 블라인드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저희로서도 가능한 한 크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게시판이나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회원이나 일반인들의 각종 게시물, 글,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도 설사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의견수렴, 또는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설득, 이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원만한 안으로 이것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로가 다 공감하고 원만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야만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지금 나온 의견들 또 현재 수렴되고 있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더 수정·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올릴 의향이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접수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외주제작사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사의 사전 합의 내용은 박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렐에 위탁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내용은 외주제작사와 미디어렐의 계약내용에 포함될 사항과 수수료 범위, 위탁계약 체결사실 고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광고판매 수수료는 랩법 시행령상 최소·최대범위를 그대로 준용하되 외주제작사와 랩사 간 자율계약에 의해 구체적인 비용을 특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률로 이동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현행 세부기준의 내용을 일부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사항만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고시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법령체계 정비 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류와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은 그 허용시간에는 他(타)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다만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이 제한되는 시간 내에서는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는 현재의 시행령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법 개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 제한규정이 재송신 조항에서 편성 조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을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를 마쳤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5페이지 가상·간접광고 규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류의 경우 17도 미만,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것은 밤 10시 이후에는 가상광고·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주류 17도 미만은 어떤 술들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구체적인 품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마도 막걸리, 맥주, 와인, 또 소주도 17도 이하짜리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부업을 또 풀어주면, 대부업을 활성화하면 국민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성인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주류는 국민건강보호증진법인지 보호법인지이고, 대부업은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으로 한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거기에서도 규제·제한하지 않는데 또 방송법 시행령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방송을 통한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의 사회적 책무·공공성 때문에 방송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타 부처보다 앞서서 이것을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데 타 부처에서도 방송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품목을 아예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일정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타 법에서도 방송광고의 영향력을 중시해서 개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방송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도 사실상 방송프로그램 광고나 토막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는 허용하고 중간광고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일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품목을 똑같이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별 법에서 별도의 품목만을 정해서 금지하거나 허용되는 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이외의 시간은 가능한 것이 사실상 법체계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법체계도 그렇고, 헌법, 실정법, 시행령, 시행세칙, 고시,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류 17도 미만이나 대부업 등은 위헌제소나 모법 위법 제소로 사업자들이 자기 권리라고 하지 않는 한 정부 정책당국에서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을 방송광고를 풀어줘서 활성화되면 지금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도 가계부채 경감일 것입니다만,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광고 늘어나면 당연히 활성화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활성화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도 사실상 개별법상 허용되고 있는 것들을 법령 정비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법령은 어떤지 모르지만 방송광고제한 품목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십수 년 전에 신용카드 발부 절차를 간소화, 간결화, 편의화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지요?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가게부채를 양산했고 가정파탄을 가져왔습니까? 저는 대부업을 방송에서 풀어주는 것은 그것에 준하는 매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주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 맥주, 와인, 소주 등은 10시 이후라고 해서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이것은 국민 건강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 보호의 문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표현은 정확해야 할 것 같은데 방송광고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광고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0시 이후에...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가상·간접광고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가상...

○ 최성준 위원장

- 가상·간접광고라고 표현해야지 방송광고라면 다 안 되는 것이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광고 중에서 가상광고가 임팩트가 제일 큰 것이다, 중간광고에 준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입할 때 작년에도 광고품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간접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활성화나 또는 중간광고 정도의 임팩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간접광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간접광고가 들어가는데 시간제한 없는 시간이 허용되는 10시 이후에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겠지만 그것이 재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간접광고가 포함된 것을 재방송으로 방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접광고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광고가 프로그램 제작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허용되는 10시 이후에 가상광고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가상광고 내용이 빠지고 재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5페이지에 보면 규정정비입니까, 규제정비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들은 규정정비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라고 한다면 규제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광고가 다 허용되어 있고 개별법에서도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적인 방송광고는 그렇지만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광고품목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현행에 되어 있는 이것을 규제 개선인지 정비해서 방통위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규제완화가 정책 목표 중의 하나니까. 그러나...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규제정비 차원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청소년 보호와 국민 경제 보호와 가계부채 경감정책의 정합성들을 검토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작년에 광고총량제 광고개선할 때도 가상·간접광고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고 시청권 침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소비 조장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 보호나 국민 가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고려해서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방통위가 방송광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사업자들이 위헌이나 위법이라면 제소해서 권리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정책 당국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가야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티타임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계부처에도

저희들이 실무 의견을 요청했었는데 금융위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했었고, 보건복지부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것을 하면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담당 쪽에서는 혹시 광고가 많아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한 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광고의 재방이 곤란한 점들을 고려할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것을 규정 정비 차원에서 허락해 주시면 공식적인 입법예고기간에 타 부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문제가 주류나 대부업 같은 것에 대한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허용한다면 어느 시간대에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간대에 허용하지 말 것이냐? 저는 이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도 미만의 주류, 대부업에 대해서 과연 가상광고·간접광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허용시간대를 넓힐 것이냐? 이런 이슈라면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반양론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법령 규정 체계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주류나 대부업법 등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개별법과의 규정 체계가 저희 방송법에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허용한다, 안 한다, 시간대를 허용한다,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사무처에서 법령 체계 정비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개별법에서 허용 여부를 정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이 내용은 개별법과 방송법 시행령 규정 간에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의 국민경제적인 파급효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률체계상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관계부처 협의기간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말고 공식적인 의견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접광고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청률 히트를 치고 있는 KBS의 '태양의 후예'에 보면 간접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나와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전혀 불필요한 장면에서 홍삼액을 먹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무슨 카페 간판을 지나치게 자주 원샷으로 고정해서 고정샷으로 비취주고, 이런 것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일반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많이 흐트러뜨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두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오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전합의로 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또 미디어랩에 위탁판매까지 하면 현재 이런 물의를 빚고 있는 PPL에 대한 개선이 과연 가능해지는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태양의 후예'나 이런 쪽에서 흥행이 많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간접광고들이 많이 붙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는 내용심의를 방심위에서 굉장히 강한 잣대를 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영물에 그것이 시청자의 흐름을 제한했다거나 지나친 광고가 나왔었다면 아마 그것이 모니터링이나 민원내용을 통해 규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외주제작사들이 지나친 간접광고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사전합의를 하고 여기 보시면 사전합의의 내용, 즉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 노출 횟수 등을 양사가 사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서 그다음에 방송사가 사전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서면합의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정신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 심의까지 다 거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외주제작사들이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서면합의가 유도가 되니까 훨씬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사실 '태양의 후예'를 예로 걱정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서면합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직접판매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수준의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서면합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우려하셨던 '태양의 후예'와 관련한 그런 과도한 것들은 방심위에서 계속 논의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미 벌써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뒤에서 규제해서 처벌하기 보다 미연에 막아야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논의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데 '태양의 후예'의 간접광고는 외주제작사가 붙인 것이 아니고 방송사가 붙인 것입니다. 방송사가 붙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주제작사가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외주사가 붙인 것은 1건도 없고 다 방송사가 붙인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붙이게 됨으로써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렐 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접광고를 판매할 때 지금까지는 물론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못 붙였는데 앞으로는 미디어렐에 위탁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현재 법에 지상파와 종편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은 미디어렐을 통해서만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제작사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법과 똑같이 지상파, 종편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따라서 미디어렐을 거쳐서 광고하도록 만든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법에서 렵 위탁까지는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렵 위탁한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그 위탁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을...

○ 김석진 상임위원

-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간략히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건 중에 <3>번 법령 체계 정비해서 주류와 대부업에 대해서 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규제 완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제정비를 통해서 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을 위반했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저도 원래 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즉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 그리고 시청자 보호차원에서 규제의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고, 또 다른 유관부처도 이견이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설령 법령 체계 정비라 할지라도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방통위가 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 대신 관계부처 외에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입법예고기간에 보면 적극적인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을 주지만 또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법령 체계 정비에 따라서 규제정

비의 효과를 받게 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견제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제 하에 다음에 궁극적으로 찬반에 대한 제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관계되는 부서를 찾아서 ‘의견 내라’, ‘의견 내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규제에 실익이 있어서 규제를 유지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규제의 체제를 새로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규제의 법 조항 자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도 사실 실무적인 의견을 물을 때 그렇게까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관계되는 부서를 일부러 찾아서 전화한다는 것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단체 의견수렴은 하시되, 방송 광고 내용에 대한 의견과 법령체계에 관한 문제는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저희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은 하여튼 의견수렴 과정에서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저희 방송법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 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류업이나 대부업을 보면 현재 법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라고 해서 시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접이나 가상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소관 법에서 가령 시간제한을 하되 가상·간접은 제외한다거나 그것은 대부업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그것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에서 허용 범위는 가령 오락이나, 뭐냐 등 그런 것들만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 계속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다른 건인데 <2>번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 있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이 상향 입법되어서 정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 정비도

해야 하고, 또 구체적인 것으로 고시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저 뒤에 일정을 보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이 7월 28일입니다. 그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8월 6일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체계만 정비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고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함에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이런 것이 그다음에 없으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림픽이 있다는데 우리가 진행을 지연시켜서 그때 제대로 적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정들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과 고시가 현행 규정과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그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올림픽 주요행사 개최 전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문제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작년 월드컵 때도 사실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충실한 자료화면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각 방송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절한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월드컵 때 있었던 것과 같은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자료화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1>번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관련은 김석진 위원님께서 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법에서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합의를 할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해야 하는지, 또 미디어랩에 위탁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나 또는 외주제작사에 특별한 이견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양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많은 논의가 됐던 가상·간접광고에 관한 법령 체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 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부업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업자 등은 이러이러한 시간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방송광고 종류를 나누지 않고 방송광고 전체를 이때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서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 토요일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 해석을 하면 이 시간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 예를 들면 간접광고를 보면 제59조의3제2항이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구의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시행령에서 각 해당 법률이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허용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정하려면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법의 위임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73조에 보면 방송광구의 허용범위를 오락에 할지, 아니면 교양에 할지, 보도·시사는 안 되는지 그런 허용범위와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방송광고를 금지하려면 대부업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처럼 법에 의해서 그 광고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법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체계에 안 맞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송법 시행령에 몇몇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품목이 전부다 제한되는 것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광고를 더 확대해서 주류나 대부업에 관한 광고가 가상·간접광고 형태로 더 많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기본적으로 아닌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대부업법에서 이런 광고의 종류를 시간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허용하는 시간에는 중간광고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이 많다고 하는 프로그램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가상·간접광고만, 중간광고와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는 같은 프로그램 내의 광고인데 이것을 법체제도 안 맞고, 논리적인 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체계를 맞춰 보자고 해서 <3>번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낸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해당 관련되는 부처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부처나 또는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부업 또는 주류의 경우 10시 이후에 프로그램 광고 아니고 프로그램 내 광고인 중간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해당 부처와 같이 해서 대부업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서 아예 그 시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광고는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광고는 못한다고 얼마든지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당시 나온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라서 법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체계 정비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위원장님께서만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입법예고하고 다른 부처의 의견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송광고와 다르게 가상·간접광고의 광고품목을 좀 더 제한한 그 방송법 시행령은 언제 만들었지요? 우리가 작년에 광고총량제 개선인지 뭔지 할 때 만든 것이지요?

○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

- 아닙니다. 그전부터 쪽 있었던 조항이고 작년에 이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전에 시행령 만들었을 때 그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

리면 가령 주류의 경우 가상광고를 밤 10시 이후에 허용한다, 낮에 허용한다, 다른 관계부처가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나 또는 심지어 여성가족부까지도 이것이 주로 오락, 연예,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에 허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처럼 검토할까요? 우리가 가상광고의 광고품목을 좀 더 제한한 이유는 가상광고의 특성, 영향력 때문이고 그래서 보도·교양에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 그런데 개별법에서 그렇게 정할 때는 방송광고의 특성을 몰라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서 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광고나 중간광고에 허용될 때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지된 품목이거나 허용시간을 뒀다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광고 금지품목이나 허용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알고 모르고는 여기에서 논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광고 제59조의2와 간접광고 제59조의3에 규정이 들어가게 된 입법 과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대부업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될 때는 그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것을 논의해서 이 규정을 뒀는지 그 입법 과정에서의 자료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서로 추측해서 이것을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법 시행령을 만들 때 가상·간접광고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둔 입법 취지가 저는 보건복지부나 금융위원회나 여성가족부보다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이 가상·간접광고의 특성을 훨씬 더 아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받는다? 주 책임, 직무는 우리 것입니다. 방송광고가 있기 때문에 방송의 특성, 각 광고 품목별, 각 광고종류별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참고일 뿐이고

우리가 국민건강과 국민경제, 국민가계 경제를 생각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과 위법이 아닌 한, 그것으로 사업자들이 제소하지 않는 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지금 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다른 법률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쪽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송법은 방송법 시행령에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법령 체계의 정비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던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시행령 말고도 방송광고 심의규정 같은 것이 위법심이다, 위법규정이다, 하는 것 말고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고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심위가 하는 것이지만...

○ 최성준 위원장

- 심의규정은 당연히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심의규정이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은 심의규정에 의해 심사를 했다면 법원에 가서 당장 문제가 됐겠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것을 심의 제한하지 말라고 풀어주지 않는 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광고심의 할 때 주류는 17도 미만이라도 가상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가상·간접광고로 10시 넘어서 한 것으로 심의 제재된 사안이 있습니까? 10시 넘어서 가상·간접광고를 한 것으로 인해서 심의 제재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업자들이 제한받는 줄 알고 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꼭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더라도 심의규칙, 심의규정 가지고서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규정이나….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제소 행정소송을 걸었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윤리에 대한 심의도 해 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현행 그대로 살려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 기회에 방송법과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의 정합성 여부, 또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과 타 부처 개별법의 법령의 정합성 여부를 클리어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뭐가 됐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보고된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오늘 계속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순한 해당 관련부처의 의견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다만 입법예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다른 것과 합쳐서 규정을 두자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하세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특히 공정성 구현의 1차 책임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최근 선거방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종합편성PP는 물론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선거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방송사 내·외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모니터 결과보고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과 보도는 민주적 여론 형성과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민주적 여론 형성에 방송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보면 제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9항 방송은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 및 절차를 보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재승인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서 공표해야 하는 항목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공정성의 원칙은 표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방송사들도 유사한 선거방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S의 선거방송 준칙의 일반원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선거보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과 주장,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보도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터뷰 및 출연인데 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종합편성PP를 재승인할 때 부과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우리들이 6개월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편PP와 공영방송의 선거방송에 있어서 보도, 소재, 보도 양, 취재원 인용, 보도 프레임 등에서 현저한 불공정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저널리즘연구회에서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선거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언론학자들이 참여해서 선거보도에 대해서 중간에 평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 종편 및 보도PP들은 법과 각 방송사의 선거방송 준칙 등을 준수해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 이후에 선거방송심의 백서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제도 점검과 정비에 대한 그러한 여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요구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수용해서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주 여러 가지 제재 또는 권고, 의견제시 등의 조치를 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니까 고 위원님께서 좀 더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0분 폐회 】